

# '97 가축위생업무 추진현황

## 배 상 호

### I. '97 가축위생예산 확보사항

'97 가축위생예산 확보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96	'97	증△감(%)	비고
가축방역	7,773	22,799	193	
축산물위생	10,045	13,284	32	수의사회관
수의업무	40	640	1,500	: 600
동물검역	7,944	8,379	5	
계	25,802	45,102	75	

### II.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 일원화 추진

#### 1. 축산식품관리의 특성

##### 축 산 물

- 축산물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사람과 동물에 함께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100여종이 있으며, 병원체와 독소는 가공처리 후에도 완전 사멸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국제수역사무국(OIE)지정 137종의 가축전염병중 70%가 인수공통전염병임(예 : 탄저병, 광우병, 소결핵, 부루세라, 기생충병, 살모넬라, 대장균 O-157).
- 인수공통전염병은 가축의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질병전문가(수의사)에 의해 일관성 있게 엄격관리.
- 가축에서 전염병이 발생시는 도살하여 소각

매몰하고, 축산물에서 병원균이 발견되면 역추적하여 질병발생농장을 색출하여 긴급방역조치.

○ 가축이나 축산물에서 전염병 또는 병원균이 발견 될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하여 국제적으로 공동대처함.

□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들을 전문조직에 의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선진국의 통례임.

○ '96. 7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햄버거에 의한 식중독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조직을 보강(차관보 신설)하고,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시행 발표.

- 가축의 사육에서 소비단계(Farm to Table)까지 오염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육류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 등 검사실시 확대.

##### 일반농산물

- 사람과 식물간 공통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은 없으며, 농약성분 등의 잔류물질과 조리시 미생물의 오염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부에서 도매시장 상장이전단계까지 잔류물질 등 조사 및 농장지도.
-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농업의 품질관리지도 체제 운용 -

#### 2. 각국의 관리체계

##### 一元化管理 國家

○ 농수산식품부(농산물·축산물·수산물 통합관리)

\*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영국,아일랜드,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헝가리 등 EU국가.

○호주, 뉴질랜드,뉴칼리도니아등 대양주 국가(1차 산업성).

○캐나다,아르헨티나,브라질등 국가(농업부산물 식품·동식물검사청).

□ 농무부 (축산식품관리)

○미국,멕시코,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

- 미국은 "연방식육제품검사법"에 의거 쇠고기, 돼지고기는 2%, 닭고기는 3% 이상 혼합된 모든 축산식품에 대한 제조 및 위생관리를 함.

- 후생부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FDA)에서는 육류를 제외한 일반식품에 대한 제조 및 위생관리를 함.

**二元化 管理 國家**

□ 일본, 벨지움

○농무부 :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업무관장.

○보건후생부 : 도축·가공 등 축산식품의 제조관리 및 유통·판매관장.

- 단, 육류는 도축단계부터, 우유는 원유의 집유단계부터 보건후생부의 전문조직(수의사)에서 관장.

□ 우리나라

○농림부 : 가축의 사육·도축 및 원유의 생산·집유와 위생관리.

○보건복지부 :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및 위생관리.

※ 이원화된 경우도 축산물을 비전문조직에서 관리하는 국가는 없음.

3. 우리나라의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변동

**'85. 7월 이전**

□ 美國과 유사한 체제로 운용

○농림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축산식품 가공 및 위생관리.

- 신선 축산물(육류·우유) 및 축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보건사회부 :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식품 제조·유통 및 위생관리.

- 축산물을 주원료로 하지 아니한 일반식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관장.

**'85. 7월 이후**

□ 일본과 유사한 체제로 전환·운용

○농림부 : 가축의 사육·도축 및 원유의 생산·집유관리와 위생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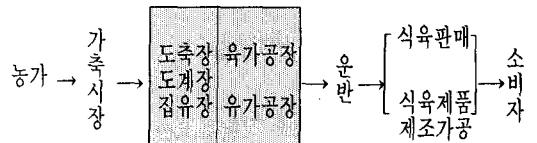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 축산물의 가공·운반·유통·판매관리와 위생검사.

<변경의 주된 사유>

○모든 식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관리一元화

- 축산물가공업의 원료사용에 대한 제한완화.

- 허가감독권의 다원화 및 제품의 규격기준·검사 기준 등 균형화.



(동일공장 시설)



그러나 축산관련업무 전체적으로는 계속 농림부(가축의 사육·도축·집유)와 보건복지부(가공·유통·판매)로 이원화됨.

4. 최근의 축산물위생관리문제가 대두된 배경

- 시장개방,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등이 주된 요인 -

□수입이 개방된 새로운 시장여건에서는 생산자들이 고품질 안전식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길 밖에 없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생산 식품안전문제가 보장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확산

○'97.7월 돼지고기, 닭고기, 부산물 개방 및 2001년 쇠고기 시장완전개방.

○생산 및 공급조절 측면에서 가공용 수입원료에 의한 수급관리는 비현실적임.

○신선축산물유통 관행에서 가공축산식품 유통시장까지 확대.

- 축산물의 기호성과 저장성을 높여 소비확대를 기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

양한 고품질의 가공품 개발 필요.

< '94. 6. WTO체제 대응책을 위한 농어촌발전위원회 건의>

- 축산물가공식품위생관리업무 일원화 및 안전성 확보 추진건의.
- '94. 10. 30. : 국무총리실(제2조정실) 주관으로 실태조사 협의후 조정 의견제시.
- 축산물가공식품중 1차 가공품(정육, 포장육, 시유 등)은 농림부에서 관장.

단계별	현행	'94.10.조정	문제점
○ 생산사육단계	농림부 소관	농림부 소관	○ 1, 2차 가공단계 구분시 산업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지 못함. ○ 2차 가공품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는 위생관리가 단절됨. ○ 동일 가공장내의 이원화로 사업자 불편 계속초래.
○ 도축·집유단계	"	"	
○ 가공단계	보건복지부 소관	농림부 소관	
- 1차 가공제품	"	보건복지부 소관	
- 2차 가공제품 (햄, 소세지, 분유 등)	"	"	
○ 식육판매단계	"	"	

○ 농림부 : 축산물위생검사의 특수성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모든 축산가공품을 일관성 있게 담당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

□ 축산물의 위생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 불안 및 생산자 의욕상실 : 부처간 분명한 책임행정을 위하여 일원화 요구.

'95. 10 : 유방염유유(고름유유)사건시, 보건복지부가 시유중 설파제가 국제기준치 이하임에도 수치발표로 소비자불안.

'96. 8 :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소간의 대장균 O-157:H7 검출 보도.

'96. 10 : 분유중 발암물질 DOP 검출 등을 부처간 협의없이 일방적 발표.

'97. 1~ : 산지소값의 큰폭 하락에도 쇠고기 소비자가 격은 소폭인하(정육점의 지도·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임).

○ 축산물 가공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축산물의 특성상 최종제품에 대한 검사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 각 단계에서의 위생조치가 가축위생 전

문가에 의하여 일관적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생산 도축 유통 각 단계에서 필요한 위생조치  
생산단계 :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약품등 유해물질의 잔류오염방지.

도축단계 : 탄저, 결핵 등의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중독균 오염 차단.

가공 유통단계 : 환경기구에 의한 오염방지조치 및 냉장유통체계 운용.

□ 축산물가공산업 및 유통업체 측면에서의 불편야기

○ 물류비용의 절감과 위생·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유가공업체에서 도축·집유와 가공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향임.

- 농림부는 종합처리장·가공시설·유통시설등에 4,586억원 지원('91~'96).

○ 도축·집유는 농림부소관, 가공은 보건복지부소관이기 때문에 동일업소에 허가증이 2개 부착되어 지도·감독 부처의 이원화.

- 도축(계)장+육가공장등→총도축(계)장중 44%, 집유장+육가공장→총집유장중 65%.

5.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결정 과정과 배경

(1) 행정쇄신위원회가 "축산가공식품관리업무일원화"를 쇄신과제로 채택.

○ 충청남도('95. 3)와 축협중앙회(전국축산업협동조합장일동)가 국민제안.

- 기타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경북도, 한국낙농육우협회, 달성군 경남낙협, 한양유통(주) 등에서도 행정쇄신 건의.

(2) '96.2.28. 농림부, 보건복지부, 15개 시·도, 3개 시·군, 13개 유관단체 및 협회 등 33개 기관 단체에 의견문의.

○ 농림부, 시·도, 시·군 등 30개 기관은 일원화에 동의.

○ 보건복지부,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은 반대의견 제시.

3) '96.4.24.행쇄위 실무위원회에서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심의의결.

농림부, 보건복지부 관계관 설명자료로 사전배포 및 의견개진.

(4) '96. 4. 28~5. 1. : 행쇄위, 농림부, 보건복지부 관계관이 시·도, 시·군 및 가공업체 현장 조사 실시.

(5) '97.2.28 : 행정쇄신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행정쇄신확정과제"로 의결.

(6) '97. 3. 대통령계 건의보고 : 행정쇄신 과제로 확정.

(7) '97.4.7.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로부터 관계법을 개정토록 당부에 통보.

□의결요지

○ 종래 이원화 되었던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체계(생산 도축 - 농림부, 가공 유통 판매-복지부)를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주관 책임부서를 농림부로 일원화 함.

-농림부는 축산물에 대한 종합적 일관적 지도 관리 차원에서 가공식품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전과정에서의 인·허가, 지도감독 등 제반행정적 업무 및 위생검사 업무를 관할.

- 보건복지부는 제3차적 입장에서 최종 판매단계의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에 참여.

검사결과는 농림부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공표.

- 위생관련 기준은 보건복지부와와의 합의를 거쳐 농림부가 제정.

6.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추진상황

□ 개정(안) 요지

○ 도축장 도계장 축산물가공장 등의 위생관리기준 규정.

○ 축산물의 생산, 처리,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오염방지를 위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정하여 시행.

○ 영업의 종류 및 인 허가 기준의 설정.

- 도축업, 도계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은 시·도지사가 허가.

-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 추진상황

○ '97. 4. 8.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부터 행정쇄신확정과제로 접수.

- 작업단구성 및 개정법률안 작성(전문개정).

○ 관계부처 협의(4. 24 ~ 5. 6).

- 재경원, 내무부, 법무부, 통상산업부, 총무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개정안에 대한 협의 완료, 보건복지

지부는 반대.

○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4. 26 ~ 5. 16).

○ 신한국당 정책위원장(김중위 의원)등과 당정협의(5. 9).

○ 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나오연 의원)· 제3정책조정 위원장(함중환 의원)과 협의(5. 12).

○ 개정안 법제처 사전심의 완료(5. 12 ~ 5. 21).

<부처별 협의내용>

부처명	수정의견	반영결과
개정경제원	시설, 관리보조금 조항중 내용 일부수정(안 제41조)	반영
법무부	허가등의 취소 및 벌칙에 대한 내용 일부수정(안 제28조 및 제47조)	반영
통상산업부	의견없음	
보건복지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	미반영
총무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령에서 규정(안 제4조)	반영
	위임·위탁에 대한 지구수정(안 제44조)	반영
공정거래위원회	출입, 수거, 검사요건의 구체화(안 제20조)	우리부와 의견 협의수용 상동
	허위표시 등의 금지중 내용일부 추가(안 제33조)	
	보고조항 삭제(안 제35조) 자율지도원 조항삭제(안 제39조)	

<보건복지부 의견>

가. 식품안전성을 중시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

○ 최근 선진각국은 생산자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추세.

나. 식품안전성 관리업무는 국민보건위생을 담당하는 복지부 고유업무임

○ 농림부가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할 경우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안전성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다. 국민편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

○ 제조업 인·허가 및 위생관리 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로 이양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라. 행정쇄신위원회 결정 절차상의 문제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협의·토론이나 심층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농림부의 입장>

가.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만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 유통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긴급요.

- 식품의 안전성은 농림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산자의 기본적 요구에 따라 소비자 위주의 신뢰받을 수 있는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공히 이를 인식하고 농림부로의 일원화 희망.

나. 식품의 안전성은 최종 소비단계의 검사강화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 가공, 유통, 단계별 위해요소 제거 및 책임관리가 필요함.

(예)우유파동문제 : 원유까지는 농림부, 시유이후는 복지부로 이원화.

정육점문제 : 농림부가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쇠고기 가격에 대한 지도가 어려움.

냉동차량문제 : 식육운반차가 생우를 운반하는데

도 단속권이 없음.

\*축산물가공·유통·현대화 지원액 : ('91~'96), 4, 586억원.

다.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에서도 이관되는 축산물가공업의 관리형태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시·도, 시·군으로 위임됨.

- 업무 일원화시 시·도 및 시·군·구의 위생과에서 축산과로 이관되며 -행쇄위에서 의견조회한 전 시·도, 시·군·구에서 농림부로 일원화를 원함.

라. '95. 3월 국민제안으로 검토된 동 업무의 일원화 건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2년여동안 충분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토의 및 현지조사를 거친 후 '97. 2. 28. 최종결론이 난 것임.

부처간 입장 이전에 대다수 선진국들과 같이 1차 생산부서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함.

**참 고 자 료**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기본대책)

<사육단계 >

- 주유가축전염병 근절목표 연도설정 및 단계별 추진
  - 돼지콜레라 (2001년), 뉴캐슬(2002년)등 9종 근절
- 축산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공동방역사업단 중심의 방역사업 추진(연차별로 250개 사업단 구성·운영 및 사업비 지원)
- 가축질병의 신속정확한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 및 검진업무 강화(수의과대학 10개소, 민간병성감정기관 확대)
- '97~2002 투자계획 : 2,544억원 (국비 1,897, 지방비 647)

<도축단계 >

- 유해성잔류물질(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등) 검사 실시
-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 및 육류중 미생물검사 실시
- 도축시설 현대화추진 : ('89~'95) 44개소, 254억원
-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추진 : ('94~2001) 12개소, 1,123억원

〈전문조직·인원 및 시설확보〉

- 현재 축산물위생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수의사) 및 연구 분석시설이 중앙 및 지자체에 이미 확보되어 있음
- 수입육류검역 : 동물검역소(155명)가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시행('91 이후)  
-수출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는 상대국과의 위생협약에 따라 동물검역소에서 검사 및 위생관리 실시
- 연구 분석
  - 중 앙 :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112명)
  - 지자체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49개소 837명)
-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항생·항균물질 농약등의 잔류검사)  
- '91년부터 수의과학연구소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

Ⅲ. 수의기술 교육관 건립

1. 사업개요

- 필요성 및 지원사유  
-수의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연수교육(연 10시간)을 대한수의사회에 업무위탁함으로써 교육관 건립 필요.  
- '98년부터 수의과대학 교육연한이 연장(현행4년 → 6년)됨에 따라 기존 수의사의 자질향상 필요성 대두.  
· 안전축산물 생산 및 가축방역(검역)에 적극 대처.

○사업개요

대지	건평	총계				비고
		대지구입	건축비	기타		
185평	600평	28억원	10	15	3	

- 지원액 : 6억원
- 2. 지금까지 추진상황
  - 수의기술교육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모금계획 : 11억원.
  - 부지선정 : 185평(평당 5,356천원 : 토개공분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 3. 문제점
  - 경기 불황으로 건축비 모금애로.
- 4. 향후 추진계획
  - '97. 5월 하순 : 기본설계 심의.
  - '97. 6월 중순 : 대지 구입.
  - '97. 7월 : 설계심의 및 건축허가신청.

- '97. 8월 : 착 공.
- '98. 3월 : 준 공.

Ⅳ. 수의사연수교육 실시

1. 교육대상 : 공·개업 수의사  
○연10시간 이상(중앙회 : 1회, 지부 : 1회)
2. 연수교육실적

	대상	실적	미이수자	비고
'95	1,943	1,938	5	
'96	2,045	2,034	11	

\* 미이수자는 면허정지(3개월) 조치

【참 고】  
【수의관련 민원회신내용 요약】

1. [발톱삭제] 행위가 수의사의 진료행위 해당여부
  - 부상 및 부제병치료 등을 수의사 지도·감독하에 삭제하여야 함.  
- 수의사이외의자의 [발톱삭제] 영업행위는 위법임
2. 동물병원에서 「동물약품판매」만의 영업행위는 위법임.
  - 동물병원과 유사한 크기의 간판게시 불가(판매업소와 구분)  
-동물병원이 주업이고 동물약품판매는 부업차원임.
3. 해외에서 박사학위취득인정 범위

- 박사학위 수여가능 대학(미국은 대학교수협의회에서 인정)에서 학위취득 → 귀국후 6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첨부 교육부에 신고.
  -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심의.
- 4. 동물약품도·소매업 구분
  - 동물약품등 취급규칙에 명문 규정 없음.
  - 동물약품유통의 특수성(보건복지부는 명문화).
- 5. 개 도축업 허용 용의는?
  - 축산물위생처리법상 개는 수축의 대상이 아님.
  - 식품위생법 소관사항임, 국제적 비난, 개 도살관습으로 범법자 양산우려 → 동물애호정신 함양.
- 6. 동물약품도매상 자산기준
  - 개소별로 별도 자본금(법인 : 1억, 개인 : 2억) 필요.
  - 서울에서 3억원으로 도매상 개설한 자가 경기도 도매상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별도로 2억원이 추가로 필요함.
- 7. [유방염 고름유유]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한 수의사 조치사항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발언으로 사회적물의 야기 → 엄중경고조치.
- 8. 외국의 수의사가 국내시험응시 가능한지 여부
  - 수의사법 제9조에 의거 응시 가능.
- 9. 주택단지에서의 동물병원개설 가능 여부
  -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지역건을 감안하여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단지안에 동물병원 개설가능(건설교통부 : '96. 2.38).
- 10. 수의사면허증 대여 행정조치
  - 경북경찰청장으로 부터 통보 → 1년간 면허정지.
- 11. 초음파진단기로 수정사가 임신감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신감정 업무가 진료행위에 해당 → 불가.
- 12. 동물판매소(애견센터)에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투약행위의 적법여부
  - 수의사법 제10조 규정위반.
  - 수의사 이외의자의 진료행위에 해당.
- 13. 수의사가 아닌 축산전문지도사의 유혈 또는 무혈 거세행위의 적법여부
  - 거세기술후 봉합, 소독 및 세균오염방지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수의사 이외의

- 자가 행할 수 없음.
  - 다만,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철저한 교육과 수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술할 수 있음.
- 14. 인공수정사의 [임신감정행위] 적법여부
  - 임신감정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
  - 다만, 인공수정사 자신이 실시한 인공수정수태여부나 재수정을 위한 임신사실여부만을 확인하는 임신감정은 가능.
- 15. 수의사를 고용,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고용주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판매)토록 규정한 것은 수의학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의사가 종전의 조제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완제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판매상과의 마찰을 없애고 양축농가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동물용의약품 판매만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물진료가 주업무이어야 함.
- 16. 지역낙우회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일괄구입, 사무실에 보관하고 회원과 일반양축농가에 판매하여 투약하는 경우의 적법여부
  - 일부지역낙우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일괄납품받아 회원 등의 농장에 치료용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하여 투약함으로서 질병을 집단적으로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동물용도매상으로 부터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처방없이 동물약품을 일괄구입, 사무실에서 진열 판매함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저촉됨.
- 17. 외국의 수의과대학 졸업자의 수의사 면허응시자격은?
  - 수의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대학에서 수리학을 전공한자 또는 수의사면허소지자는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18. 동물병원에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의 적법여부
  - 수의사법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병원에 "간호사"로서 채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와 같이 검사·주

사·투약 등 동물진료보조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으나 보조원으로 채용하여 동물의 보정·잡무처리 등 수의사를 보조할 수는 있음.

- 또한 6년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4년 이후에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수의간호사"제도를 검토할 수 있음.

19. (사)한국동물구조협회 소속 구조요원의 야생조수 구조나 난폭견포획 등 업무수행시 응급처치 및 마취제 사용이 수의사법위반 여부

○ 동물의 응급처치 및 마취제 사용은 진료행위에 해당되어 수의사 이외의 자가 행할시 수의사법 제10조에 저촉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야생조수나 인명의 안전이 우려되는 난폭견 포획은 숙련된 구조요원들의 조직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수의사의 감독하에 동물의 응급처치 및 마취제 사용은 가능할 것임.

20. 인공수정사가 수정란이식시술시 자궁세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의사법 제10조 및 축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공수정사는 독자적으로 자궁세척(관류액 회수)을 할 수 없으나 축산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관류액회수는 가능함.

21. 인공수정사가 수정란이식시 마취제를 주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의사법 제10조 및 축산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인공수정사는 마취제의 주사를 할 수 없음.

22. 수의사법상 동물병원명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가축병원, 수의과병원, 동물병원"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동물의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정된 수의사법(법률 제4747호, '94. 3.24) 제2조 제4호에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진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와

같이 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동물을 진료하는 장소임을 알리는데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23. 애견센터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제72조의6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규칙에 의거 동물약국, 동물약품판매업 허가를 받거나 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하여야 동물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애견센터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아울러 백신접종이나 기생충구제제 투여도 할 수 없음.

24. 농협과 같이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의 사업종류에 동물진료규정이 없음에도 수의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시설 기준을 구비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남 합천 가야면 농협질의)

○ 축산진흥을 위한 축협이 양축농가를 위한 가축방역, 동물진료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농협에서의 동물병원개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정관상 사업의 종류에 동물진료에 관한 사업이 명시되어야 동물병원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25.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수의사가 무료로 한 우거세를 할 경우 수의사법 위반인지 여부

○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위생 검사 등 수의업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하는 자로서 동물진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완비하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따라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수의사가 한 우거세를 시술하는 것은 시술비의 유상이나 무상을 불문하고 수의사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됨.